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4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 임이자 · 박대수 · 윤두현

송언석 · 김영식 · 김형동

コ석기・金炳旭・김성원

이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2 등).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34조 및 제46조"를 "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으로,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을 "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업기간에"를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를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임금등 비용"을 "임금등 및 생계비"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2"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임금등"을 "임금등 및 생계비"로, "사업주"를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를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체당금의 지 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	3		
법」 제2조· <u>제34조 및 제46</u>	<u>제34조 · 제46조</u>		
<u>조</u> 에 따른 임금· <u>퇴직금 및</u>	<u>및 제74조제4항</u>		
<u>휴업수당을</u> 말한다.	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		
	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②		
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			
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			
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생 략) <신 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 ⑦ (생 략)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저 용자) ①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u>한다)</u>
③
출산전후휴가기간에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u>융자)</u>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
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

- ② <u>제1항</u>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 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체불 <u>임금등 비용</u>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	계비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u>수 있다</u>	<u>.</u>			
	③ 제1항 및 제2항				
	<u>4</u>	<u>임금등</u>	- 및 생기	月月	
1 1	147/H		ゴ 人 \	1	
세	14全(〒	당이득의	완丁)	1)	
	<u>제7소의</u>	<u>2</u>			
	<u>제7조의</u>	<u>2</u>			

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2. (생략)
 -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u>임금</u> 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 8. (생략)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u>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u>,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 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 두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용도)
1. • 2. (현행과 같음)
3임금
<u>등 및 생계비사</u>
업주 및 근로자
4. ~ 8. (현행과 같음)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체불 임
금등 및 생계비 융자
·

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11. (생 략)
- ②・③ (생 략)

- _____
- -----
- 1. ~ 11. (현행과 같음)
- ② ③ (현행과 같음)